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2월 24일 21시 42분



# 목차

목차	2
이륜차신고	3
대상	3
신고장소	3
구비서류	3
신고장소	3
과태료	4

자동차등록	건설기계등록	이륜차신고	과태료	취득 등록면허세
검사/의무보험	자동차등록현황	민원서식	자주하는 질문	오시는 길

- **사용신고**
- 신고사항변경
- 사용폐지신고
- 신고필증/번호판/봉인재교부
- 용어해설

## 대상

- 이륜자동차(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)로 제조업체에서 제작되어 신규출고 또는 사용폐지 한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고입니다.

## 신고장소

- 읍·면·동 사무소에 신고.

## 구비서류

구분	구비서류	
공통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</li> <li>▪ 제작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&gt; 수입이륜차 :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</li> <li>&gt; 사용폐지 : 사용폐지증명서</li> </ul> </li> <li>▪ 의무보험(대인,대물)보험 가입증명서</li> <li>▪ 신분증(위임시 : 위임장, 위임받는자 신분증)</li> </ul>	
추가서류	개인	▪ 추가서류 없음
	법인	▪ 법인등기부등본

## 신고장소

-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, 사용폐지증명서 제작증에 같은 서류입니다.
- 개인사업자명의로 사용신고가 불가능합니다.

## 과태료

구분	기간	금액
미신고 운행	적발과 동시	50만원
구조 또는 장치 변경운행	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 장치 등	20만원
	그 밖의 구조 및 장치	3만원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# Yeosu Web Contents

